

여전도회작은자복지재단 제95회 정기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13:30
장 소 : 여전도회관 805호(종로구 을곡로 190)
사 회 : 홍기숙 대표이사

1부 경건회

: 홍기숙 대표이사의 기도로 경건회를 시작하여 찬송 435장을 부른 후 김규곤 이사가 기도 후, 말씀 시편 15편 1-5절을 교독하고 주기도로 경건회를 마칩니다.

2부 회무처리

1. 회원점명

홍기숙 대표이사 : 추워진 날씨 가운데 2026년 첫 이사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교 서기이사님께서 참석이사님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교 서기이사 : 예, 이사 15명 중 11명 참석(홍기숙, 김남교, 조성자, 김희원, 김순미, 최효녀, 이난숙, 최상민, 김규곤, 정인철, 이경우), 실무자는 여성쉼터 정미정 원장, 경북작은자의 집 백성희 원장, 천사노인복지센터 박소라 센터장, 보성군립노인요양원 밝은동산 김시영 원장, 다함께 돌봄센터 김미옥 센터장, 법인사무국의 박정은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2. 개회선언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므로 제95회 정기 이사회를 개회합니다.

3. 회의록 낭독

홍기숙 대표이사 : 전회의록 낭독 시간입니다. 김남교 서기이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교 서기이사 : (낭독)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지난 이사회 회의록은 보고로 받겠습니다.

이사 일동 : 예

4. 경과보고

홍기숙 대표이사 : 지난 제93회, 94회 이사회 이후 내역을 박정은 국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은 국장 : 예, 자료 9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5년 8월 8일에 진행된 전라남도 내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제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총 3건이 있었으며, 이중 첫 번째는 법인 사무국을 주 사무소에서 운영하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법인 사무국 직원 수당, 상여금 등이 후원금 사용기준에 위반되어 시정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세 번째는 여전도회와의 관계 부분에 대하여 법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공문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이사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후 관련기준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겠다는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발송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안전시간에 이사님들께서 다루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실무자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우선 경과보고로 받고, 추후 안전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보고

홍기숙 대표이사 : 다음은 2025년도 결산 감사보고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김남교 서기이사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교 서기이사 : 예, 자료 10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보고 낭독)

홍기숙 대표이사 : 2025년도 결산 감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감사보고는 보고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사업보고

홍기숙 대표이사 : 다음은 2025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입니다. 법인사무국부터 각 시설 원장님들께서는 2025년도에 진행된 사업들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무국장 및 각 시설장 : (사업보고 설명)

홍기숙 대표이사 : 한 해동안 현장에서 수고하신 법인 사무국 및 각 시설에 계신 원장님들께 수고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사 일동 : (박수)

7. 토의안건

홍기숙 대표이사 : 첫 번째 안건으로 “보성군다함께돌봄센터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건”입니다. 김미옥 센터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센터장 : 예, 지난 2025년도 종사자에 대한 3, 4분기 특별수당 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이부분을 미처 결산 전에 추경을 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추인으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존예산 161,000,000원보다 1,000,000원 증액한 162,0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주무관청과는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김미옥 센터장 : 예, 담당 주무관에게도 양해를 구한 상황입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설명 들으셨습니다.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곤 이사 : 동의합니다.

이난숙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첫 번째 “보성군다함께돌봄센터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 전에 꼭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5년도 법인 및 시설(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조성자 회계이사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회계이사 : 예, 자료 30면에서 55면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65,933,000원이었으며, 결산액은 9,156,705,037원으로 예산대비 96.7%가 집행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법인 사무국 601,352,083원, 작은자의집 1,302,221,262원, 여수여성센터 995,606,701원, 경북작은자의집 3,081,329,159원, 보성군립노인요양원 밝은동산 1,677,587,951원, 작은자재가노인복지센터 843,472,070원, 천사노인복지센터 512,785,390원, 보성군다함께돌봄센터 142,350,421원으로 각각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액은 8,030,517,923원으로 예산대비 84.8%가 집행되었으며, 기관별 집행현황을 보면, 법인 사무국 493,615,517원, 작은자의집 1,253,982,352원, 여수여성센터 907,293,721원, 경북작은자의집 2,762,720,858원, 보성군립노인요양원밝은동산 1,657,440,598원, 작은자재가노인복지센터 306,898,031원, 천사노인복지센터 509,548,563원,

보성군다함께돌봄센터 139,018,283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월금은 1,126,187,114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금 대비 190,445,027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료집 46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 사무국 특별회계 현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28,919,662원과 2025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4,696,718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액은 133,616,380원입니다. 지출부에서는 동일한 금액인 4,696,718원이 이자수입관련 회계처리로 집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장내역에 있는대로 잔액은 128,919,662원입니다.

보성군다함께돌봄센터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5천만원이 예치되고 있으며, 법인 부채 현황으로는 전계옥 이사에게 차입한 45,000,000원 중 2025년까지 27,000,000원을 상환하여 현재 결산 기준 잔액은 18,00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설별 예금보유 현황을 보시면, 각 시설이 보유한 예금 총액은 2,941,275,441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비 예금 1,126,274,614원, 퇴직연금 적립금 1,626,657,315원, 예수금 90,080,729원, 적립금 62,910,539원, 기타 35,352,244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회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난숙 이사 : 동의합니다.

김규곤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두 번째 “2025년도 법인 및 시설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여수 여성쉼터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건입니다. 정미정 원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정 원장 : 예, 올해부터 여성쉼터를 담당하게 된 정미정 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쉼터는 2026년에 편성된 보조금 중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예산과 스토킹 치료회복예산의 증액으로 인해, 이번 1차 추가경정 예산을 기존 예산 1,008,486,000원에서 63,514,000원 증액된 1,072,0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56면에서 59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설명 들으셨습니다.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이사 : 동의합니다.

최효녀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세 번째 “여수여성쉼터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천사노인복지센터 시설장 임기 만료에 따른 심의의 건입니다. 천사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이신 박소라 센터장님은 잠시 자리를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국장 : 예, 현재 저희가 보성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천사노인복지센터의 수탁기간은 2028년 4월 30일까지이고, 현재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에 임기 이전에 시설장의 인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상민 이사 : 현재 모든 시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바, 임기 이전에 시설장 공고를 내고, 절차에 따라 시설장을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그러면 이 안건은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공고를 통해 시설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이사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네 번째 “천사노인복지센터 시설장 임기만료에 따른 심의의 건”은 절차대로 공고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다섯 번째 안건은 “작은자후원회 대표회장 및 공동회장 추천의 건”입니다. 현재 정관 제26조 9항(이사회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작은자후원회 대표회장 및 지역별 공동회장 선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작은자후원회 대표회장 유현모, 서울강북지역 공동회장 정계숙, 서울강남지역 공동회장 조경자, 경기지역 공동회장 장후경, 중부지역 공동회장 장정식, 강원지역 공동회장 홍정숙, 경남지역 공동회장 신명숙, 경북지역 공동회장 김춘호, 전남지역 공동회장 김일순, 전북지역 공동회장, 박은숙, 시카고지역 공동회장 김혜순, 테네시지역 공동회장 임경환 이상 12분의 후원회 대표회장 및 지역별 공동회장을 추천하고자합니다.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곤 이사 : 동의합니다.

김남교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다섯 번째 “작은자후원회 대표회장 및 공동회장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외부감사 회계법인 선임의 건”입니다. 현재 회계법상 외부회계법인으로터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올해 외부감사 회계법인으로 삼덕회계법인을 추천합니다.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난숙 이사 : 동의합니다.

최상민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외부감사 회계법인 선임의 건”은 삼덕회계법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실무자는 외부감사 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안건은 “주사무소 이전 및 법인 정관 개정의 건”입니다. 박정은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국장 : 예, 지난 제93회 이사회에서 논의된 법인 주사무소 이전 건과 관련하여, 금번 전라남도 지도점검 시 “법인 사무국을 주사무소 주소지에서 운영하라”는 시정조치 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 법인 정관 중 일부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따른 표준정관과 상이한 부분이 확인되어, 추후 정관 개정 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이사회에서는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사항 및 법인 정관 개정의 건을 함께 상정하고자 합니다.

최상민 이사 : 이사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저도 전라남도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주사무소 이전을 의결한 후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진행하면, 전라남도과 서울시 간 협의를 거쳐 인가가 이루어진 뒤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사무소 이전은 전라남도의 인가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우선 이번 이사회에서는 주사무소 이전의 건과 전라남도 지도점검 시 시정조치 사항을 함께 안건으로 다루고, 정관 전반의 개정 사항은 다음 이사회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최상민 이사님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최상민 이사님 말씀대로 전라남도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사일동 : 예, 허락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그러면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안건으로 일곱 번째 안건을 “**법인사무국을 주사무소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은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국장 : 예, 현재 저희 법인은 정관상 주사무소를 전라남도 보성군에 두고 있으나, 현실적인 예산 및 인력 여건으로 인해 법인 사무국의 핵심 기능(인사·노무, 회계, 전국 단위 사업 관리 등)을 서울 분사무소에서 통합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지도점검 결과인 ‘법인사무국을 주사무소 주소지에서 운영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고, 서울 사무국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첫째, 서울 사무국은 시설 운영 관리뿐 아니라 ‘전국 단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 협의 및 후원 관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상근 인력 파견 시 법인 목적 사업 전반에 심각한 행정 공백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법인의 현 예산 구조상 파견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는 오히려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큼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파견은 임시방편일 뿐, 전라남도가 요구하는 ‘상시적·지속적 운영 체계’ 구축이라는 시정조치의 근본 취지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법인은 시정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인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무국 업무가 이루어지는 서울 소재 분사무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등록 주소지와 실질적 운영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남 지역 내 수탁 시설 지원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비 조치라고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 해주시고, 이사님들의 의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이사 : 전라남도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면서, 실질적인 주사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로의 주사무소 이전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주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최효녀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법인 사무국을 주사무소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주사무소를 서울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안건은 “**후원금 사용기준 위반의 건**”입니다. 박정은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국장 : 예, 법인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된 일부 수당(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비지정후원금 인건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어 관련 규정 및 사용기준

을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해당 수당 체계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 구두 승인 후 2026년 1월 급여부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부합하도록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인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맞추어 기존 수당 체계를 기본급 + 직무수당 체계로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이사 : 예, 시정이 필요한 만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상민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후원금 사용기준 위반의 건”은 기존의 수당체계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기본급과 직무수당 체계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법인 이사회 독립성 강화(여전도회)의 건”입니다. 박정은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국장 : 예, 전라남도 지도점검 결과, 현행 정관 중 일부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관리내」 지침에 따른 표준정관과 상이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전도회 및 작은자후원회와 법인의 관계가 독립적·협력적 관계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일부 조항에서 수직적·종속적 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 및 법인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법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여전도회 및 작은자후원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최상민 이사 : 이사장님, 본 안건은 정관 및 운영규정 전반을 정비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최종 협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 추후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 이사 : 정관과 법인운영규정(안)에 대해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법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에 계시는 최상민 이사님을 비롯하여, 법인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던, 이승재 연권이사님과 윤효심 연권이사님께서 실무자와 함께 검토에 참여하시어, 다음 이사회 시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개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규곤 이사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본 법인의 설립정신과 운영 방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후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정인철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이사님들께서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예, 아홉 번째 안건인 “법인 이사회 독립성강화(여전도회)의 건”은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최종 협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후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마지막으로 열 번째 안건은 법인 취업규칙 제정의 건입니다. 박정은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국장 : 예, 기존의 법인 운영규정에 존재되어있던 법인 사무국 직원의 인사·복무·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근로관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자합니다.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급여의 구성을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정년과 관련하여 법인 사무국장은 만 67세, 과장 및 간사는 만 62세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만 60세에 도달한 말의 말일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사무국에 속한 전체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결과도 말씀드립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예, 법인 사무국의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설명 들으셨습니다.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이사 : 이사장님, 취업규칙의 내용 중에서 제11조 유급의 기타휴가는 모두 근무경력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규곤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유급의 기타휴가는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열 번째 “법인 취업규칙 제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안건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 없습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채택 시간입니다. 김남교 이사님 회의록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교 이사 : (회의록 낭독)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동의와 재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녀 이사 : 동의합니다.

조성자 이사 : 재청합니다.

홍기숙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찬성하시면 “예” 반대하시면 “아니오”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 예

홍기숙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 이경우 이사님의 기도로 제95회 정기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1)

참석이사

홍 기 숙

김 남 교

조 성 자

김 희 원

김 순

최 효 녀

이 난 숙

최 상 민

김 규 곤

정 인 철

이 경 우

감 사

김 동 규

이 중 현

은 정 화

여전도회작은자복지재단 (제95회) 정기 이사회

◆ 일시 : 2026. 2. 5(목) 13:30 ◆ 장소 : 여전도회관 8층 805호 회의실

번호	성명	직위	서명
1	홍기숙	대표이사	홍기숙
2	박화식	부이사장	
3	김남교	서기	김남교
4	조성자	회계	조성자
5	김희원	이사	김희원
6	홍순자	이사	
7	김순미	이사	김순미
8	김미순	이사	
9	최효녀	이사	최효녀
10	이난숙	이사	이난숙
11	전계옥	이사	
12	최상민	이사	최상민
13	정인철	이사	정인철
14	김규곤	이사	김규곤
15	이경우	이사	이경우
16	이중현	감사	
17	김동규	감사	
18	은정화	감사	

◆ 제95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여전도회작은자복지재단